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특례 부여 》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68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제2218368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절차상 특례 부여(안 제6조제5항 신설)	2
나.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우선 지원(안 제29조제 2항제1호의2 신설)	14

I.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제2218368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16.

다. 회 부 일 : 2026. 4.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유치업종 추가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절차상 특례 부여(안 제6조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생략) <u><신설></u>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제4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	⑦ -----제6항에도----- ----- ----- ----- ----- ----- ----- ----- ----- -----.

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생략)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생략)

⑧ 제7항-----

-----제6항제3호부터-----

-----.

-----제7항-----

-----.

⑨ 제6항에-----

-----.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⑦ (생략)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 ⑥ (생략)

제22조(토지수용)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6항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략)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⑥ -----
-----제6조제6항
부터 제9항까지를-----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6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수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조제6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② ~ ④ (생략)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나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조성사업(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의4,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4,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11까지,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제39조의19부터 제39조의21까지,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제47조 및

제6조제7항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①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9항에도-----
② ~ ⑦ (생략)	-----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 ① ~ ④ (생략)	-----
⑤ 제39조의2에 해당하는 재생사업 지구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제6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6조제9항에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현행법상 국가산업단지¹⁾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²⁾, 국토교통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 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³⁾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⁵⁾ 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법 제6조제4항 후단, 법 제7조의2제5항 및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변경
2.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의 및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인구감소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및 산업수요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⁶⁾.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총 89개인데, 이들 지역의 면적은 전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합산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구도 매년 큰 폭으로 감소⁷⁾하고 있음.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및 주요 유치업종 등이 포함⁸⁾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구감

6)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절차만 간소화되는 것이므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임.

7) 인구감소지역은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23%씩 인구가 감소하였고,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매년 0.27%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② 법 제6조제5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3.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와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강화나 유치업종 조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완화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기반 확충과 기업 유치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심의회의 심의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산업정책, 국토계획, 환경, 기반시설 수급, 재정지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중요 사항 변경에 관한 협의·심의 절차를 전면 생략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정합성 및 관계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5. 법 제38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6. 제40조제3항에 따라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참고로, 현행법 제7조의3제2항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혁신 도시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 일정한 사업지역·지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의 특례에 해당하고, 여전히 심의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따른 심의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심의회의 구성¹⁰⁾을 고려하면, 심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관계 중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신행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예정지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지역·지구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

양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정책조정 기능이 일정 부분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인구 및 지역활력 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서¹¹⁾, 해당 기준이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입주수요, 미분양률 또는 기반시설 확보 수준 등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다는 사정만으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산업단지가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 및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2.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넷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업단지 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협의의 동시 진행¹³⁾, 미회신 시 협의 간주¹⁴⁾ 및 통합조정회의를 통한 이견조정¹⁵⁾ 등의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라는 사정만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3)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0조(관계 기관 협의)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1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를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업단지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우선 지원(안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생략)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에 개발 중인 국가산업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법 제29조제1항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 · 도로 · 용수시설 · 철도 · 통신 ·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을 ①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와 ② 심의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산업단지로 규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2025년 12월 기준, 산단 지정 현황 】

(단위 : 개,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전국	계	1,359	1,481,716
	국가	55	799,309
	일반	765	589,480
	도시첨단	54	14,606
	농공	485	78,321
인구 감소 지역	계	497	201,071
	국가	8	39,999
	일반	157	108,750
	도시첨단	2	82
	농공	330	52,239

※ 자료: 국토교통부

실제로,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8곳에 불과하며, 그 중 6곳은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¹⁶⁾.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원인 중에

16) 보은국가산업단지, 논산국방 국가산업단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6곳)

는 기업 입주수요의 부족 및 정주여건 미비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이라는 별도의 법체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한편, 「인구감소지역법」 제28조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¹⁷⁾하고 있음¹⁸⁾.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 및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18) 반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2조에

또한, 현행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도 현행 규정상 일정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는 같은 항 제1호의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현행법상 요건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기반시설 우선지원 대상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규모와 무관하게 인구감소지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가능해져, 현행법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모 요건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현재도 「인구감소지역법」 및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구감소지역등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이미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우선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¹⁹⁾, 국가산업단지는 인구감소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반시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²⁰⁾,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를 별도로 우선지원 대상으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

20)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55곳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곳은 8곳이며, 면적 기준으로는 5%에 해당한다고 함.